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[주식]
- 변경 사유 : 이익분배 방법 변경 (전액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)
- 효력발생일 : 2018. 7. 5.
-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		
정보	2018. 2. 28. 기준	<u>2018. 5. 31. 기준</u>
4. 운용전문인력		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4. 집합투자업자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(여의도동, 10 층)	<u>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1 길 10(성수동 1 가)</u>
5. 운용전문인력	2018. 2. 28. 기준	<u>2018. 5. 31. 기준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 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 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
가. 이익 배분		

※2018 년 월 일 이후 매년 결산 ·
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
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
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
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
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
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
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
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될
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
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
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
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
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
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
랍니다.
